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
----------	------

발의연월일 : 2022. 3. 2.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이대곤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 1. 21.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단서 추가(안 제4조)
- 나.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신설(안 제8조 신설)
- 다. 조문 정비(안 제9조~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행한다.</u> <u><신 설></u> <u>제8조 ~ 제14조 (생 략)</u>	<u>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u> <u>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u> <u>제9조 ~ 제15조 (현행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u>

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